

2025년 틱스(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 수정 공고

『2025년 틱스(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』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,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8월 29일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※ 본 공고는 「2025년 틱스(TIPS) 창업기업 지원계획 통합 공고」(공고 제 2025-246호, 2025년 4월 9일)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 공고입니다.

- ① [트랙별 공통]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에 따른 신청제한 기준 변경
- ② [일반트랙] 틱스 엔젤투자금 세부요건 수정
- ③ [글로벌트랙] 지원대상 내 선택요건 수정 및 신설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* **TIPS** :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

- 민간 투자사*를 통해 우수한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자와 정부 자금을 매칭 지원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 활성화 도모

*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, 투자,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 기획자, 초기전문VC, 벤처·중소기업 및 대·중견기업 등

□ 틱스 세부사업별 현황

틱스(TIPS) 세부사업명			지원 대상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한도	기업부담	신청접수	선정평가
R&D	일반트랙		틱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(예비)창업기업	총 4,776억원 (신규, 계속, 종료)	24개월	최대 5억원	총 연구비의 25% 이상	수시	수시
	딥테크 트랙		틱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10대 초격차 분야 창업기업		36개월	최대 15억원			
	글로벌 트랙		틱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글로벌 진출 역량 보유 창업기업		36개월	최대 12억원			
비 R&D	연계사업	창업사업화 해외마케팅	'24년까지 틱스(TIPS) R&D (일반, 딥테크)에 협약(완료)한 창업기업	총 650억원 (신규)	각 10개월	최대 3억원 (합계)	총 사업비의 30%이상	수시	수시

※ 자세한 내용(신청 자격, 접수 일정 등)은 아래 세부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확인

2. 세부사업별 지원계획

※ 접수, 평가, 선정 등 추진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내용은 팁스 홈페이지(www.jointips.or.kr) 또는 개별 안내 등을 통해 통지 예정

(1) 팁스R&D 일반트랙

□ 사업개요

- 팁스 운영사가 창업기업을 선별하여 1억원 이상 투자 후 추천하면, 정부는 평가를 거쳐 R&D 자금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

팁스 운영사란?

- ◇ 엔젤투자 재원을 보유하고 창업기업 선별, 투자, 보육 등 지원역량을 갖추고 있는 창업기획자, 초기전문 벤처캐피탈, 벤처·중소기업 및 대·중견기업 등으로,
 - 유망한 창업기업을 발굴·선별하여 엔젤투자자와 보육, 멘토링하는 기관·기업
 - ◇ 팁스 운영사의 투자 및 추천을 통하여 동 사업에 참여 가능
 - 현재 활동 중인 운영사 현황(www.jointips.or.kr, ABOUT TIPS - PARTNERS) 참고
- ※ 팁스 운영사는 단순 접수처가 아닌 사업 가능성이 높은 창업기업을 선별·투자하는 기관

□ 지원 내용

< 2025년 팁스R&D 일반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>

사업기간	팁스 운영사 엔젤투자금 (인정금액 기준)	총 연구개발비(A+B)		
		정부지원 연구개발비(A)	기관부담연구개발비(B)	
			현금	현물
최대 2년	1억원 이상 (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A)의 최소 20% 이상)	최대 5억원	해당 금액	해당 금액
		총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	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(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)	

※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(창업기업)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최소 투자금(고유계정형은 1억원, 펀드계정형은 2억원) 이상 투자 유치 필요(단, 운영사의 지분율은 30% 이하)

* 단, 창업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 제외)에 소재할 경우,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(고유형·펀드형 모두 100% 기준 적용)

- (자금 지원) 운영사 엔젤투자금에 정부가 연구개발비 최대 5억원을 매칭 지원하고,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지원

엔젤투자금 세부 요건

◇ (기본요건) 틱스 운영사(컨소시엄)가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1억원 이상 투자

< 투자 유형별 엔젤투자금 인정 기준(추천마감일 기준 3년 이내) >

연번	투자 유형		인정금액	비고
1	틱스 운영사의 투자금액	고유계정형	투자금액의 100%	단, 창업기업의 본사 또는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할 경우, 투자 유형과 무관하게 투자금액 전액 인정
2		펀드계정형	투자금액의 50%	
3	운영사 컨소시엄(협력기관) 투자금액		투자금액의 100%	총 엔젤투자 인정금액(1억원)의 50% 이상은 운영사 투자 필요
4	프리팁스 신청 시 인정금액 (비수도권 프리팁스 기업 한정)		인정금액의 100%	

◇ (투자조건) 투자금액, 지분율 등 투자 조건은 운영사-창업기업 간 자율 협의

* 단, 틱스 총괄 운영지침의 '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방안' 준수 필요

** 틱스 선정 이후 투자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불가(중단) 및 선정취소

- (기타 지원) 운영사가 보육·멘토링,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
 - 운영사 지정 보육공간(인큐베이터)*에 입주하여 보육,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

*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(운영사 컨소시엄)이 보유한 보육 공간

□ 지원 대상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, 아래 필수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* '업력'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'법인'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'법인설립등기일', '개인사업자'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'사업자등록증'에 기재된 '개업일'을 기준으로 함

**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[붙임2] 참조

※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'창업기업 확인서' 요청 시 제출 필요

팁스R&D 일반트랙 필수요건

◇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(확약) 후 추천된 (예비)창업기업(2인 이상 구성 필요)

* 기관(대학·연구기관 등) 또는 기업에 소속된 상태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법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사업 신청 가능

** 단, 최종 선정 후 반드시 법인 설립 및 기본 자격요건 충족 필요

◇ 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% 이상* 보유, 운영사 지분율은 30% 이하로 유지**

* 창업기업 지분 60%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

**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

◇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

* 단,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(10억원) 이상인 경우,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지원 제외사항

① 팁스R&D*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(재참여 불가)

* 일반트랙, 딥테크 트랙, 글로벌 트랙, 스케일업 팁스

② 딥테크 트랙, 글로벌 트랙에 신청 또는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, 일반 트랙 지원 불가

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([붙임2] 참조)

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‘참여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중인 경우

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
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(기업)

⑦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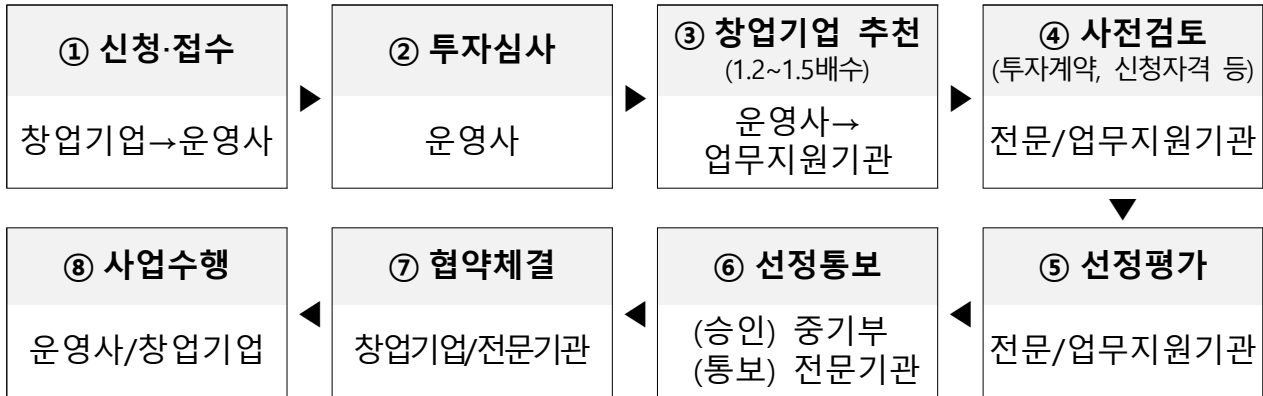
- 1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
- 2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50만불 이상인 경우
- 3)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

※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3] 및 「팁스 총괄 운영지침」 참조

□ 선정 절차

-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 2025년 틱스R&D 일반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>



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업무지원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**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업무지원기관으로 신청

① 신청·접수 (창업기업 → 틱스 운영사)

- (신청 기간) 상시 접수 (별도 접수기간 없음)
- (신청 방법) 틱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, 투자심사역 면담,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([붙임1] 참조)
- (신청 양식)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
- ※ 창업기업은 복수의 틱스 운영사(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)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, 틱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

②~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(틱스 운영사 → 업무지원기관)

-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(확약)한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(운영사별 연간 추천 T/O범위 내)
- * 창업기업 사업 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(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<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>

- 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
 - 이용매뉴얼 : '알림·고객' → '자료실' → 'IRIS 사용 매뉴얼' 참조
- ◇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: www.k-startup.go.kr
 - 고객센터 → 온라인 매뉴얼 → 창업사업 매뉴얼 → '(창업자)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'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

④ 사전검토 (전문/업무지원기관)

-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(지분, 의무사항, 채무불이행, 과제의 차별성 등) 및 운영사-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

⑤ 선정평가 (전문/업무지원기관)

-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창업기업 역량, 기술아이템 전문성, 운영사 투자 및 지원계획 등을 운영사(시장성)·창업기업(기술성)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

※ 종합평점 = 선정평가(100%) + 가점(최대 3점)

< 가점사항 >

- ① 창업기업의 본사(본점) 또는 공장*이 비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에 소재하고,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(확약서 제출) (2점)
 - *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,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
- ②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 (1점)
- ③ 프리팁스(Pre-TIPS) '성공' 기업 (2점)

⑥~⑦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(중소벤처기업부/전문기관)

-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,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, 지원 금액을 결정
- 창업기업-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최대 5억원)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

⑧ 사업수행 (팁스 운영사/창업기업)

- 지정 보육공간(인큐베이터)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·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
-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-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며, 전문/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(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)를 통해 “우수”, “보통”, “미흡”, “극히불량*” 여부 판정
 - * ‘극히불량’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
 - ** “우수” 또는 “보통” 과제의 경우, 향후 ‘포스트팁스’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 제공

□ 사업화 성공요건

팁스R&D 일반트랙 사업화 성공요건

※ 아래 사업화 성공 요건 7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

- ① M&A성사 (10억원 이상)
- ② 기업공개 (IPO, 코넥스 포함)
- ③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팁스 연구과제 관련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
- ④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팁스 연구과제 관련 연간 수출액 50만불 이상
- ⑤ 후속 투자유치
 - *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 이상인 경우
- ⑥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신규고용 15명 이상
- ⑦ 상기 ③~⑥의 요건 중, 2가지 이상의 요건에서 제시된 기준의 1/2이상을 만족한 경우
 - * 성공예시 : 매출 5억원 이상 + 신규고용 8명 이상

(2) 틱스R&D 딥테크 트랙

□ 사업개요

- 우수 기술·인력을 보유한 신산업 스타트업의 육성하기 위해 긴 초기 연구 개발 기간과 높은 자본 지출을 동반하는 초격차 분야 딥테크 기업 지원

< 스타트업 10대 초격차 분야 >

시스템반도체	바이오·헬스	미래 모빌리티	친환경·에너지	로봇
빅데이터·AI	사이버보안·네트워크	우주항공·해양	차세대원전	양자기술

□ 지원 내용

< 틱스(TIPS) 딥테크 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>

사업기간	틱스 운영사 엔젤투자금	총 연구개발비(A+B)		
		정부지원 연구개발비(A)	기관부담연구개발비(B)	
			현금	현물
최대 3년	3억원 이상 (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A)의 최소 20% 이상)	최대 15억원	해당금액	해당금액
		총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	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(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)	

※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(창업기업)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
(단, 운영사의 지분율은 30% 이하로,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)

- (자금 지원)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3억원 이상*에 정부가 3년간 연구 개발비 최대 15억원을 매칭 지원

* 틱스R&D 딥테크 트랙의 경우,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(고유형·펀드형 모두 100% 기준 적용)

- (기타 지원) 운영사가 보육·멘토링,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
 - 운영사 지정 보육공간(인큐베이터)*에 입주하여 보육,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

*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(운영사 컨소시엄)이 보유한 보육 공간

□ 지원 대상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,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* '업력'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'법인'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'법인설립등기일'을 기준으로 함

**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[붙임2] 참고

※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'창업기업 확인서' 요청 시 제출 필요

팁스R&D 딥테크 트랙 필수요건

- ◇ **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* 후 추천된 초격차 분야 연구개발 창업기업 (2인 이상 구성 필요)**

*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계약 체결 필요

- ◇ **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% 이상* 보유, 운영사 지분율은 30% 이하로 유지****

* 창업기업 지분 60%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

**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

- ◇ **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**

* 단,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(15억원) 이상인 경우,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□ 지원 제외사항

- ① 팁스R&D*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(재참여 불가)

* 일반트랙, 딥테크 트랙, 글로벌 트랙, 스케일업 팁스

- ② 일반트랙, 글로벌 트랙에 신청 또는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, 딥테크 트랙 지원 불가

- 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([붙임2] 참조)

- 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'참여제한' 또는 '지원제외' 중인 경우

-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- 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- ⑦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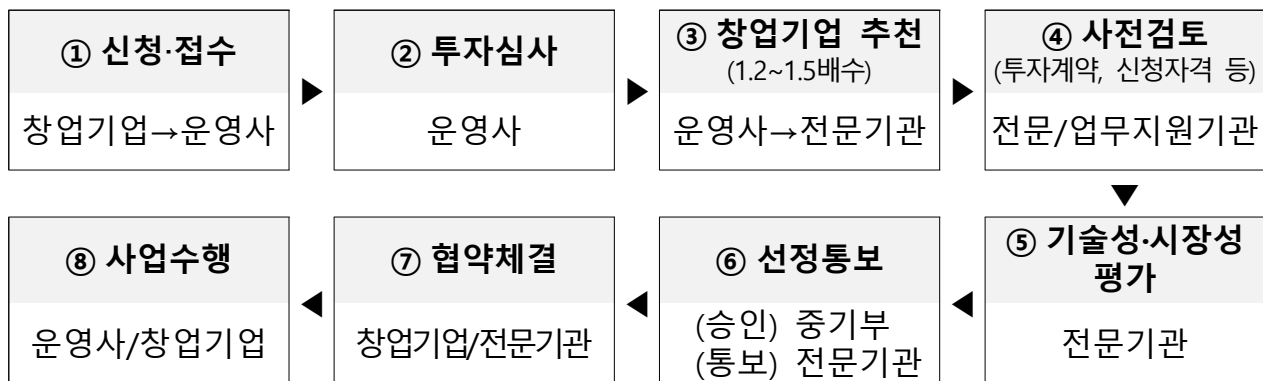
- 1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
 - 2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75만불 이상인 경우
 - 3)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

※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3] 및 「팁스 총괄 운영지침」 참조

□ 선정 절차

-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 2025년 팁스R&D 딥테크 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>



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업무지원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**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전문기관으로 신청

① 신청·접수 (창업기업 → 팁스 운영사)

- (신청 기간) 상시 접수 (별도 접수기간 없음)
- (신청 방법)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, 투자심사역 면담,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([붙임1] 참조)
- (신청 양식)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

※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(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)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,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

②~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(팁스 운영사 → 업무지원기관)

-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한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(운영사별 연간 추천 T/O범위 내)
- * 창업기업 사업 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(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<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>

- 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
 - 이용매뉴얼 : '알림·고객' → '자료실' → 'IRIS 사용 매뉴얼' 참조
- ◇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: www.k-startup.go.kr
 - 고객센터 → 온라인 매뉴얼 → 창업사업 매뉴얼 → '(창업자)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'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

④ 사전검토 (전문/업무지원기관)

-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(지분, 의무사항, 채무불이행, 과제의 차별성 등), 지원요건 및 운영사-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

⑤ 선정평가 (전문기관)

- (1차평가 : 기술성) 딥테크 분야 적합성, 기술의 도전성과 혁신성, 기술의 독립성과 원천성 등을 창업기업 중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
 - * 1차 평가(기술성평가)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, 2차 평가(시장성 평가)를 면제하는 '패스트트랙' 활용 가능
- (2차평가 : 시장성) 시장분석의 적정성, 신시장 창출 가능, 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운영사·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

※ 종합평점 = 기술성 평가(60%) + 시장성 평가(40%) + 가점(최대 3점)

< 가점사항 >

- ① 창업기업의 본사(본점) 또는 공장*이 비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에 소재하고,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(확약서 제출) (2점)
 - *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,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
- ②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 (1점)
- ③ 프리팁스(Pre-TIPS) '성공' 기업 (2점)

⑥~⑦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(중소벤처기업부/전문기관)

-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,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, 지원 금액을 결정
- 창업기업-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최대 15억원)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

⑧ 사업수행 (팁스 운영사/창업기업)

- 지정 보육공간(인큐베이터)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·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
-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-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며, 전문/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(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)를 통해 “우수”, “보통”, “미흡”, “극히불량*” 여부 판정

* '극히불량'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

** “우수” 또는 “보통” 과제의 경우, 향후 '포스트팁스'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 제공

□ 사업화 성공요건

팁스R&D 딥테크 트랙 사업화 성공요건

※ 아래 사업화 성공 요건 7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

- ① M&A성사 (15억원 이상)
- ② 기업공개 (IPO, 코넥스 포함)
- ③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팁스 연구과제 관련 연간 매출액 15억원 이상
- ④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팁스 연구과제 관련 연간 수출액 75만불 이상
- ⑤ 후속 투자유치
*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의 1.5배 이상인 경우
- ⑥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신규고용 23명 이상
- ⑦ 상기 ③~⑥의 요건 중, 2가지 이상의 요건에서 제시된 기준의 1/2이상을 만족한 경우
* 성공예시 : 매출 7.5억원 이상 + 신규고용 12명 이상

(3) 틱스R&D 글로벌 트랙

□ 사업개요

- 해외 투자 등과 연계를 통해 글로벌 진출 기반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국내 유망 스타트업을 글로벌 혁신기업으로 육성

□ 지원 내용

< 2025년 틱스R&D 글로벌 트랙 창업기업 지원 내용 >

사업기간	틱스 운영사 엔젤투자금	총 연구개발비(A+B)		
		정부지원 연구개발비(A)	기관부담연구개발비(B)	
			현금	현물
최대 3년	3억원 이상 (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(A)의 최소 20% 이상)	최대 12억원	해당금액	해당금액
		총 연구개발비의 75% 이내	총 연구개발비의 25% 이상 (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% 이상)	

※ 운영사의 엔젤투자금은 투자기업(창업기업)의 지분확보를 조건으로 함
(단, 운영사의 지분율은 30% 이하로, 창업기업의 경영권 보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정)

- (자금 지원) 운영사의 엔젤투자금 3억원 이상*에 정부가 3년간 연구개발비 최대 12억원을 매칭 지원

* 틱스R&D 글로벌 트랙의 경우, 운영사 투자재원별 인정비율 동일(고유형·펀드형 모두 100% 기준 적용)

- (기타 지원) 운영사가 보육·멘토링, 글로벌 진출 등을 종합 지원

- 운영사 지정 보육공간(인큐베이터)*에 입주하여 보육, 멘토링 등 운영사별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

* 운영사의 자체 또는 협력기관(운영사 컨소시엄)이 보유한 보육 공간

□ 지원 대상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또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, 아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

* '업력'은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'법인'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'법인설립등기일'을 기준으로 함

** 창업 여부 및 업력 산정 기준은 [붙임2] 참고

※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'창업기업 확인서' 요청 시 제출 필요

팁스R&D 글로벌 트랙 필수요건

- ◇ **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 투자* 후 추천된 창업기업(2인 이상 구성 필요)**
 - * 팁스 운영사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계약 체결 필요
- ◇ **창업기업이 전체 지분의 60% 이상* 보유, 운영사 지분율은 30% 이하로 유지****
 - * 창업기업 지분 60%이상을 대표자 등 창업기업 구성원 2인 이상이 보유해야 함
 - ** 창업기업 추천 마감일부터 최종 선정 후 협약체결일까지 지분율 유지 의무
- ◇ **직전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**
 - * 단,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사업화 성공조건(15억원) 이상인 경우,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

- (선택요건) 필수요건 충족 and 선택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필수

① 해외 투자자(VC, 엑셀러레이터, 엔젤투자자 등)로부터 투자유치 받은 창업기업

※ 해당 투자금의 규모와 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증빙서류 및 확인서 제출 필요

② 최근 3년('23년 이후) 중 해외 매출액 성과가 있는 창업기업

③ 해외 법인을 보유·운영하고 있는 창업기업

※ 단, 팁스R&D 글로벌 트랙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국내 법인이어야 함

④ 해외 파트너사*와 MOA** 또는 구매계약서 등을 체결한 창업기업

* 파트너사는 반드시 해외 소재 국외 법인이어야 하며, 신청한 과제 관련 아이템에 대한 계약(협력)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식 문서 제출 필요

** MOA는 협력 의향을 문서화한 비구속적 합의서인 MOU와 달리 특정한 조건과 세부적인 사항을 담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서

⑤ 국내·외 글로벌 진출 관련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참가(수료) 기업

* 주최기관 발급 증빙서류(선정 확인서, 수료 여부가 명시된 공식 증명서 등) 제출 필요

** 국내 기관 주최 프로그램의 경우, 글로벌 진출 관련 내용이어야 함

⑥ 해외법인 설립 계획을 보유한 창업기업

* '해외법인 설립 계획서' 제출 필수, 선정 시 협약 기간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외법인을 설립하고 증빙서류 제출 (미이행 시 과제 중단 및 환수)

※ 선택요건 관련하여 정량기준에 근접한 수준일 경우, 글로벌 역량 및 성장잠재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

□ 지원 제외사항

① 틱스R&D*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(재참여 불가)

* 일반트랙, 딥테크 트랙, 글로벌 트랙, 스케일업 틱스

② 일반트랙, 딥테크 트랙에 신청 또는 선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, 글로벌 트랙 지원 불가

③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([붙임2] 참조)

④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‘참여제한’ 또는 ‘지원제외’ 중인 경우

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해당하는 경우

⑥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(기업)

⑦ 다음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창업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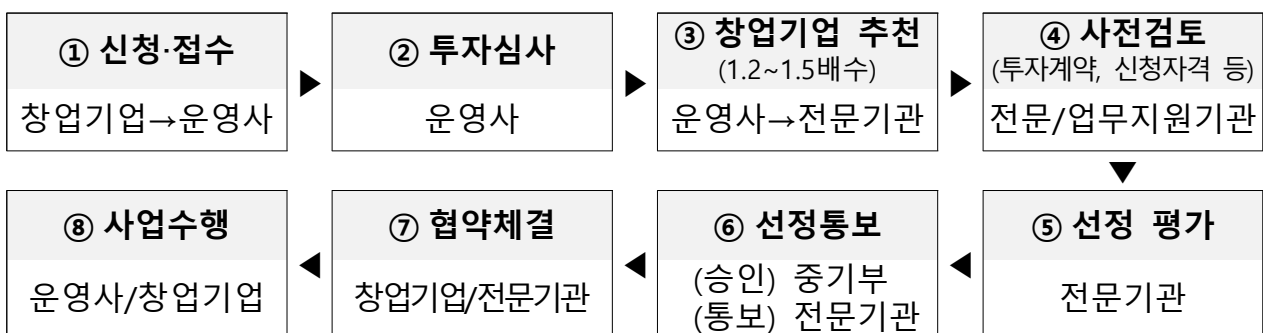
- 1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매출액이 15억원 이상인 경우
- 2) 제안 사업 아이템과 연관된 직전 연도 수출액이 75만불 이상인 경우
- 3) 접수마감일 기준 누적 투자유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

※ 신청 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3] 및 「틱스 총괄 운영지침」 참조

□ 선정 절차

- 창업기업 선정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, 일부 절차의 경우 사업 운영현황 및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< 2025년 틱스R&D 글로벌 트랙 신청 및 선정 절차 >



* (전문기관)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, (업무지원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, 한국벤처캐피탈협회

** 선정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, 전문기관으로 신청

① 신청.접수 (창업기업 → 팁스 운영사)

- (신청 기간) 상시 접수 (별도 접수기간 없음)
- (신청 방법) 팁스 운영사별 자체 공모 참여, 투자심사역 면담, 이메일 등 운영사에 개별 문의 ([붙임1] 참조)
- (신청 양식) 운영사별 지정 또는 창업기업 자율 양식으로 활용 가능

※ 창업기업은 복수의 팁스 운영사(추천권 보유 협력기관 포함)에 투자 제안이 가능하나, 팁스에 지원하기 위한 추천은 1개 운영사에서 받아야 함

②~③ 투자심사 및 창업기업 추천 (팁스 운영사 → 업무지원기관)

- 운영사 자체 심사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하고 투자한 창업기업을 업무지원기관에 추천
- * 창업기업 사업 분야가 운영사의 전문 투자분야가 아닌 경우 투자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
- 추천된 창업기업은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에 등록(접수마감일 기한 내 미등록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)

<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>

- 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
 - 이용매뉴얼 : '알림·고객' → '자료실' → 'IRIS 사용 매뉴얼' 참조
- ◇ 연계지원사업 과제관리시스템 : www.k-startup.go.kr
 - 고객센터 → 온라인 매뉴얼 → 창업사업 매뉴얼 → '(창업자) 차세대 PMS 사용자 매뉴얼'에서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 확인 가능

④ 사전검토 (전문/업무지원기관)

- 창업기업의 기본 신청자격(지분, 의무사항, 채무불이행, 과제의 차별성 등), 지원요건 및 운영사-창업기업 간 투자계약의 적절성 등을 검토

⑤ 선정평가 (전문기관)

-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글로벌 진출전략의 구체성, 글로벌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을 운영사·창업기업의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평가

※ 종합평점 = 선정평가(100%) + 가점(최대 3점)

< 가점사항 >

- ① 창업기업의 본사(본점) 또는 공장*이 비수도권(서울/경기/인천 제외)에 소재하고, 협약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 잔류를 확약하는 경우(확약서 제출) (2점)
* 공장이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, 공장등록증명서 제출 필수
- ② 내일채움공제(플러스) 도입·운영 (1점)
- ③ 프리팁스(Pre-TIPS) '성공' 기업 (2점)
- ④ 글로벌 특허 등록 기업 (2점)

⑥~⑦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(중소벤처기업부/전문기관)

- 각 평가절차를 모두 통과한 창업기업에 대해 종합평점,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여부와 함께 기간, 지원 금액을 결정
- 창업기업-전문기관 간 협약체결 후,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최대 12억원) 지급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납부

⑧ 사업수행 (팁스 운영사/창업기업)

- 지정 보육공간(인큐베이터) 등에 입주하여 운영사의 멘토·보육 지원을 받으며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수행
- 연차 종료 시 전문기관 또는 업무지원기관은 운영사-창업기업이 제출한 연차보고서를 검토하며, 전문/업무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시적으로 사업수행 결과물 및 연구개발비 사용 실태를 점검할 수 있음
-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최종평가(개발목표 달성 및 사업화 성공요건 달성 여부 평가)를 통해 “우수”, “보통”, “미흡”, “극히불량*” 여부 판정

* '극히불량' 판정 과제의 경우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한 제재사항 결정

** “우수” 또는 “보통” 과제의 경우, 향후 '포스트팁스'를 통해 추가지원 기회 제공

□ 사업화 성공요건

팁스R&D 글로벌 트랙 사업화 성공요건

※ 아래 사업화 성공 요건 7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

- ① M&A성사 (15억원 이상)
- ② 기업공개 (IPO, 코넥스 포함)
- ③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팁스 연구과제 관련 연간 매출액 15억원 이상
- ④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팁스 연구과제 관련 연간 수출액 75만불 이상
- ⑤ 후속 투자유치
 - *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후속투자유치액이 최근 3년간 국내 벤처캐피탈 업계 평균 투자금의 1.5배 이상인 경우
- ⑥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이후, 신규고용 23명 이상
- ⑦ 상기 ③~⑥의 요건 중, 2가지 이상의 요건에서 제시된 기준의 1/2이상을 만족한 경우
 - * 성공예시 : 매출 7.5억원 이상 + 신규고용 12명 이상

※ 추후 사업요건 및 정책방향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(4) 틱스 비R&D 연계사업 (창업사업화 · 해외마케팅)

※ 틱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)의 경우 2025년 틱스R&D 선정기업은 당해 지원 불가하며, 2026년부터 신청가능(후속투자 시 우대)

□ 사업개요

- (사업목적) 틱스R&D 등에 선정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, 국내·외 마케팅 활동 등을 지원하여 기술창업 성공률 제고
- (지원대상) '24년까지 틱스R&D (일반트랙, 딥테크트랙)를 협약(완료)한 기업으로 모집 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
 - 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
- (지원내용)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자금 합계 최대 3억원
- (협약기간) 협약 시작일로부터 10개월 이내
- (선정규모) 총 650개사 내외

□ 지원 내용

- (사업화 자금)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 합계 최대 3억원
 - * 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별 각각 최대 1.5억원 이내이며,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자금(정부지원사업비) 차등 지원

< 틱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) 총 사업비 구성 >

사업기간	총 사업비(A+B)		
	정부지원사업비(A)	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(B)	
		현금	현물
각 최대 10개월	총 사업비의 70% 이하	총 사업비의 10% 이상	총 사업비의 20% 이하
		총 사업비의 30% 이상	

※ 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 선정 시 창업기업 자기부담사업비는 사업별 각각 납부

□ 신청자격

- 2024년까지 틱스R&D(일반트랙, 딥테크트랙)를 협약(완료)한 기업으로 모집차수별 접수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

*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25조 제4항에 따른 신산업 창업분야인 창업기업의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 기업까지 신청 가능

** '업력'은 해당 모집차수별 접수마감일 기준 산정 및 '법인'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'법인설립등기일'을 기준으로 함

※ 신청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[붙임4] 참조

※ 2024년까지 틱스 R&D(일반트랙, 딥테크트랙) 협약(완료)기업 중 비R&D 연계사업에 미참여한 기업 대상 추후 별도 신청안내 예정(2025년 R&D선정기업 당해 참여 불가)

□ 신청 제외사항

<창업사업화>

- ① 틱스 창업사업화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 (재참여 불가)

- ②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“창업사업화 지원사업*”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

*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: 「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창업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
** 동일년도 2개 이상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, 각 사업의 협약 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

*** 단, 2025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
-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등

- ④ 선정 이후 사업수행 중,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※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4] 참조

<해외마케팅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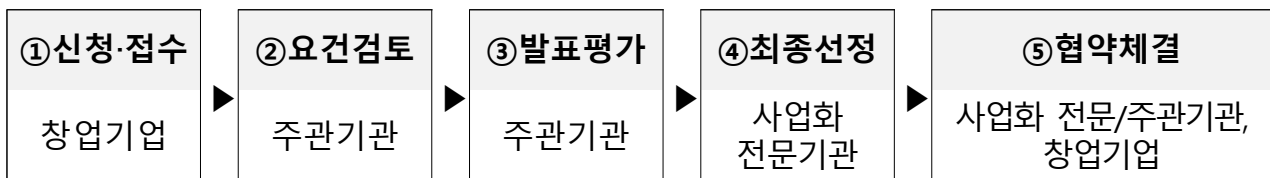
- ① 틱스 해외마케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창업기업(재참여 불가)
- ②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 중앙정부·공공기관의 “글로벌 창업 지원사업*”에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인 창업기업
 - * 글로벌 창업지원사업 : 「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」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해외진출 및 현지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, 마케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(예비)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
 - ** 동일년도 2개 이상의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에 동시 선정되는 경우, 각 사업의 협약 체결일 이전에 반드시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야 하며, 최초 협약을 체결한 1개의 사업만 수행 가능함
 - *** 단, 2025년 글로벌 창업지원사업이 아닌 경우 또는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·종료일 등 협약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
-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(기업),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(기업) 등
- ④ 선정 이후 사업수행 중, 중복여부를 재확인하여 지원제외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음

※ 지원제외 세부사항은 [붙임4] 참조

□ 선정 절차

- 틱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) 선정은 아래와 같이 별도 평가를 통해 결정 (자세한 선정절차 및 유의사항은 [붙임4] 참조)

< 틱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, 해외마케팅) 별도평가 절차 >



* (사업화 전문기관) 창업진흥원, (주관기관) 한국엔젤투자협회

※ 2024년까지 틱스 R&D(일반트랙, 딥테크트랙) 협약(완료)기업 중 비R&D 연계사업에 미참여한 기업 대상 추후 별도 신청안내 예정(2025년 R&D선정기업 당해 참여 불가)

4. 기술료 납부 : R&D

- (납부대상) 최종평가 “우수” 또는 “보통”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,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창업기업
- (납부방식) 창업기업은 경상기술료(매출 기반 약정기술료)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
 - *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「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」에 따라 징수
 - 창업기업은 운영사의 팁스 추천 때 연구개발계획서에 사업화 성공 달성 시의 예상 매출액 및 연구개발 결과물의 비중(기여도)을 직접 제시
 - * 선정평가 시, 관련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우대
 -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(사업화)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
 - * 세부내용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“사후관리(기술료/성과/정산) 매뉴얼” 참고
- 기술료 납부방식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” 및 “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” 을 따름

5. 기타 공지사항

-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된 사항은 아래의 법령, 요령 및 관리지침을 적용함

◇ 법(법령)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
◇ 행정규칙(훈령, 고시) 등

-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」, 「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」, 「연구개발비 부정사용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운영규칙」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,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,

◇ 기타 관리지침

- 「팁스(TIPS) 총괄 운영지침」,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

- 신청 자격증빙, 투자내역, 가점 신청 등 신청서류 일체는 접수 마감일 이후 추가·보완제출 불가(접수 마감일 이후 서류가 미비할 경우, 평가대상에서 제외)
- 평가·협약 진행 중에 지원제외 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, 평가·협약 대상에서 제외(또는 협약해약)
- 운영사와 창업기업 간 투자계약(투자금, 지분율 등)은 운영사의 투자금 및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보육·지원, 운영사로서의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상호 간 자율적으로 협의 필요
 - * 단, 팀스 운영지침 내 “창업기업 투자·보육 운영 방안” 등에 따라 부적절한 투자계약은 환류하고, 이면계약, 차명·가장납입, 대가성 수수료 지급, 부정한 이익의 요구·약속·취득 등 위법·부정한 행위가 있을 시에는 지원이 취소됨(운영사 지정 취소 가능)
-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적용
 - 창업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당 청년인력 1인을 신규로 의무로 채용해야 하며, 협약서류에 청년인력 신규 채용계획을 포함하여야함
 - * 예시) 1.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영리기관에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2. 영리기관 두 개 기업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, 영리기관 A가 7억원, B가 8억원으로 기업 신청금액 합계가 15억원인 경우, 2개 기업이 논의하여 3명 채용해야 함
 - ** 「청년고용 친화형 R&D 패키지」 세부지침 가이드에 따라 변동 가능
 -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며(중도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), 과제수행기간 동안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 계상률 100%를 유지
 - *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. 단,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%씩 동시 참가는 가능
 - **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%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
 - (신규채용 시점) 해당 평가 월의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 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참여연구원(정규직)
 - * 신규 채용 시점 기준이며, 군 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대 만 39세까지 인정)

- (3책5공 제도)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
 - 3책5공 위반인 과제는 선정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음
 -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,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
- * 3책5공 제도 :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하는 제도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,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)

< (참고) 연구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/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>

구분	책임자	책임자 외 연구자
주관연구기관	연구책임자	참여연구자
공동연구기관	참여연구자	

※ 위탁연구기관은 제외

6. 문의처

구 분		담당 기관	전화번호
일반 트랙	업무	한국엔젤투자협회 평가팀	02-3440-7421
	지원기관	한국벤처캐피탈협회 평가팀	02-3017-7053,7070
딥테크 트랙 글로벌 트랙	전문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팁스실	02-2280-0461~4
연계사업 (창업사업화/ 해외마케팅)	사업화 전문기관	창업진흥원 민관협력팀	(국번없이) 1357
	주관기관	한국엔젤투자협회 연계사업팀	02-3440-7421
사업총괄(정책문의)		중소벤처기업부 신산업기술창업과	(국번없이) 1357
시스템·전산 문의		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	(국번없이) 1877-2041
		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(RCMS)	(국번없이) 1661-5855
엔젤투자 및 팁스추천 문의		팁스 운영사	[붙임1] 참조
홈페이지		(팁스) www.jointips.or.kr (연계지원사업) www.k-startup.go.kr (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) www.iris.go.kr (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) www.rcms.go.kr	

※ 운영사는 민간 투자기관으로, 창업기업의 투자 협상 및 팁스 추천 등에 관한 문의만 가능.

각 트랙별 지원사업의 지원자격, 절차 등 세부적인 문의는 사업별 해당기관으로 문의

[붙임1] 팁스 운영사(신청·접수처) 현황

[붙임2]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유의사항

[붙임3] 팁스 신청방법, 신청제한 및 유의사항

[붙임4] 팁스 비R&D 연계사업(창업사업화·해외마케팅) 관련 안내